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11. 12.(수) 15:2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2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 개의시간이 20분 지체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일부 안전에 관해서 좀 더 논의를 하느라고 회의가 늦게 개의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50차, 제5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52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52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대로 상정이 되고, 그중 <의결안건>이었던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회의로 잡혀 있는 11월 18일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오늘은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을 공개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4-53-17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추진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8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고, 7월 9일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월 18일~8월 4일까지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고, 8월 26일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10월 3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무 폐지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사무소안, 간행물·소식지·청구서, 그리고 전자적 표

시방법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미흡한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누출 신고기관 추가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누출 등 신고기관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추가하고, 24시간 내에 통지·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개선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취급 시 비밀번호와 바이오정보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저장토록 하고 있으나,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하고, 현실변화에 따라 암호화 대상의 추가·변경이 용이하도록 암호화 대상을 고시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입니다. 현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고 청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바,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라 조문 삭제입니다.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이 지난 '12년 8월에 있음에 따라 망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해당 시행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 규정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매체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매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또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신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전송 가능 기간을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별도의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 가능매체 규정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야간시간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야간시간의 광고에 의한 수신자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을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매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광고 전송 시 표기의무 사항 개선입니다. 광고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대상 매체가 “전자적 전송매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매체 구분(“전화”)을 삭제하고, 전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외 전자적 전송매체로 구분하여 명시사항과 방법을 간명하게 규정하고, 광고 표기의무 위치를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통일하는 한편, ‘성인광고’ 명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표시의무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신동의 등 처리결과 통지 규정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수신동의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등의 사실과 의사표시일자, 처리결과를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정기적인 수신동의의 유지 의사 확인 규정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신동의의 유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는데, 수신동의 유지 의사는 2년 주기로 확인하되,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일자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과징금 및 과태로 부과기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행령 개정 때 입법 예고했을 때 주요기관의 제출의견과 검토결과인데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에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공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첫 번째 ‘전자적 표시방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서 폐지하는데 전자적 표시방법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홈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전자적으로 표시하여 일정한 부분에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있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클릭하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그것을 여쭙 본 것은 전자적 표시방법, 정보통신망법이 용어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적 표시방법이, 법률 개정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약간 풀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의견수렴 내용을 보니까 주로 사업자 단체들 의견, 결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것을 쪽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분들은 어차피 새로운 규제가 되거나, 있던 규제를 보완하는 것일지라도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은 전부 ‘불필요하다’, ‘무엇 무엇을 유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의견은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개정안에 대해 더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는 사람은 없는지, 앞으로 만약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의견이 상반되는 그런 대상들로부터 같이 의견을 듣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행령 개정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 지난 7월에 범정부적으로 만든 개인정보 종합대책 중에 방통위가 해야 할 일 중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과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는 내용들은 언제 추진하려고 합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관련된 법안을 작성 중에 있고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번 정기국회 때 보니까 정무위에서는 전자거래금융법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도입했지만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심의하거나 다른 데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5월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서 개정이 됐고 오늘 시행령 개정안은 그 법률 개정된 내용을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지는데, 그중 7월에 발표된 정부대책으로 포함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도 뭔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좀 더 확인을 하면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에 중복되는 규정들이 있고, 또 각각의 적용범위의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해서 명확하게 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그런 작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관장하고 있는 안행부와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해야 할 부분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실무적으로 안에 대해 안행부와 저희가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신속히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기주 위원님 여쭙 보신 것 중에 <1>번 전자적 표시방법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자적 표시방법은 우선 보통 일반인들은 그것을 봐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언어 자체는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언어가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그것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볼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렇게 눌러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지만 그것은 이미 홈페이지 다른 곳에 다 게시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한글로 별도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볼 수 있는 것도 게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굳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지요?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의미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조금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실무적으로 따지면 전자적 표시방법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요 개정 내용 중에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한다', 이 말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것이 개선이 아니고 약간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차라리 그 말을 빼든지, 아니면 뭔가 설명을 약간 붙이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해 오면서 쌓인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한 것까지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유효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3년이든지, 우리가 새로 의결하면 1년이든지 개인정보를 파기하면 그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쌓아놓은 포인트도 있고 마일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함께 날아가는 것

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돈을 주고 샀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백화점 쇼핑을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부분은 상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본인이 마일리지 적립포인트에 대한 보호조치를 별도로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 **김재홍 상임위원**

- 자기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은 가령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면 1년 동안 어디 해외에 나갔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쇼핑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쌓인 포인트 마일리지도 굉장히 많이 쌓였다, 그런데 본인이 해외에 있는 동안 이것이 삭제됐다, 그러면 본인이 모르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가 이용권을 10만 원어치 사놨다, 그런데 1년간, 2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없어지느냐? 그 문제는 그것의 소멸 시효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용권이 아니고 인터넷 온라인 속에 남아 있는 적립포인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그 당사자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삭제하지 않거나 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그것도 역시 일종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그것은 삭제 못 하는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삭제되지 않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문제없는 것이고요.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와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사람의 개인정보는 1년 동안 이용을 하지 않으면 파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개인정보를 파기하면 마일리지와 포인트 적립된 것을 연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일리지와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그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본인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삭제되면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타 법령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삭제 못 하는 것입니까?

○ 김용일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상법에서 마일리지와 포인트의 채권으로서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5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자들이 원할 때 이용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파기 대상이 굉장히 축소되겠는데요. 1년간 이용하지 않고 마일리지 적립포인트도 없어야 파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말씀 드리면, 특별히 이용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지 않아도 현재 상법상 채권과 관련된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정보와 그 사람의 포인트는 따로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김재홍 위원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면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는 결국 있을 수가 없는 셈이 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유효기간 조항에 보면 타 법에 정한 경우에는 법에 예외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기간 3년을 쓰지 않든 1년을 쓰지 않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관계가 없고...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따라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우리 개정안을 설명하고 나중에 확정 시행될 때는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정리해서 설명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법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인 경우에 그렇지만 지금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그것보다도 경제적인 상거래가 없어도 그런 것을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서로 클리어(clear)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에 직접적으로 워딩(wording)이 안 된 내용이라도 같이 정리해서 잘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개정내용 네 번째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의 경우 정보통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주요 제출의견을 보시면 통신사업자연합회와 인터넷기업협회가 적용시점 혼선 발생 우려, 시스템 개발비용 부담을 지적했고, 시행일을 특정함으로써 적용시점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뜻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시스템 개발비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유효기간을 줄이는데 별도의 시스템 개발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볼 때에는 이미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내년 여름쯤이면 시행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 자기들이 그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왔기 때문에 1년을 단축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시스템 비용이 별도로 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의견을 주더라도 그쪽도 일정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납득이 되도록 의견을 주어야 하는데, 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데 도대체 어떤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하는지, 또 그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 드는지,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시스템 개발을 해야 하고 비용이 든다면 이렇게 의견을 주셔야 하겠지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당히 걸러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업체들이 보면 휴면 이용자들에 대해서 3년간 갖고 있으면 마케팅 이런 데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외부에 설명할 때 상세한 내용을 보충해서,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은 더 보완해 주십시오. 이 안건 자체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4-53-174~18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은 게임업체와 쇼핑몰은 개인정보 취약분야로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법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가 개인정보 누출을 의심하고 위원회로 자진 신고를 하여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사업자는 아래 박스에 있습니다만 게임·쇼핑몰사업자 12개, 자진신고사업자 10개입니다. 주요 경과는 지난 3월~8월까지 방통위와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다음 10월 15일까지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 및 처분규정입니다. 먼저 박스를 보시면 개인정보관리 취약분야 조사대상 12개 사업자 중에 7개 사업자, 그

다음에 누출 자진신고 사업자 10개 중 9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반사업자들은 정보통신방법 평균 2개 조항을 위반하였고, 조항별로는 동법 제28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개인정보관리 취약분야> 게임·쇼핑몰 사업자입니다. (주)이엔피게임즈 등 7개 사업자가 비밀번호 등을 송·수신하면서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주)로이제이 등 2개 사업자가 위탁자로서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법 제25조제4항(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누출 자진신고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주)KG이니시스 등 8개 사업자가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통제 미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이고, (주)사람인HR 등 2개 사업자가 이용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법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주)KG이니시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고, (주)한국케이بل텔레콤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미동의 시 서비스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23조의2(주민번호의 사용 제한)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위반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한국케이بل텔레콤은 개인정보 취급위탁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주)월서코리아어학원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할 때 일부 항목을 누락한바 있습니다. 이는 제25조제2항(개인정보 취급위탁) 위반 및 제27조의2제2항(개인정보 취급 방침의 공개)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돈조이대부중개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철회의 방법이 수집 동의 때보다 어렵게 하였고, (주)엑토즈소프트는 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법 제30조제6항(이용자의 권리 등) 및 제31조제1항(법정대리인의 권리)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안)입니다. 먼저 <개인정보관리 취약분야> 게임·쇼핑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방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7개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1,000만원인데, (주)이엔피게임즈는 감정기준인 과실 또는 시정조치 완료 등을 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주)씨앤씨미디어, (주)크리엔트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는 또 50%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 이상이기 때문에 가중사유에 해당되고, 또 감경사유인 과실 및 시정조치 완료 등 2개를 같이 적용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법인회생절차에 있는 (주)윈디소프트와 법령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주)쿠키코리아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만 명령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방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주)로이제이, (주)한빛소프트 등 2개 사업자는 과태료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어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위반사업자별 앞서 말씀 드린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누출 자진신고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정확한 개인정보의 누출 시점, 그다음에 누출경로의 파악 등이 어려워서 누출원인과 방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바 과태료 처분만 하고, 누출과 관련이 있는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사업자도 동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과관계가 증명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출건수가 적거나 영세·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안을 마련하였고, 그다음에 누출과 관련이 없는 제23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4조의2제3항(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제25조제2항(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제30조제6항(이용자의 권리)을 위반한 사업자는 자진신고 사업자임을 감안

하여 과태료·과징금 없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밑을 보시면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한 8개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KG이니시스는 감경기준인 과실 및 시정조치 완료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플랫폼, (주)한국케이بل텔레콤은 가중기준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고, 그다음에 감경기준인 과실 및 시정조치 완료 등을 적용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누출 자진 신고사업자 중 누출건수가 50건 미만인 (주)사람인 HR, (주)월서코리아, (주)한국정보인증과 영세·중소기업인 돈조이대부중개, (주)슈빅은 시정조치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주)엑토즈소프트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누출건수가 1건인 (주)사람인HR은 시정조치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주)KG이니시스와 제24조의2제3항·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주)한국케이بل텔레콤, 그다음에 제30조제6항을 위반한 돈조이대부중개,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주)엑토즈소프트는 누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항이고, 자진신고 사업자임을 감안하여 과태료·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주)월서코리아어학원은 과태료 처분조항이 없어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린 내용을 요약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향후 계획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11월 중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여기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게임업체와 쇼핑몰사업자는 연초에 안행부와 같이 하는 합동점검단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약 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쇼핑몰과 게임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니까 쇼핑몰과 게임사가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알겠는데, 쇼핑몰 중에서 이런 이런 회사, 게임사 중에서 이런 이런 회사, 이것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퍼트(PERT)라는 합동조사단에서 여러 쇼핑몰과 게임사를 정한 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등을 사전적으로 조사해서 취약하다고 조사된 사항들을 선정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개인정보 누출이 일어나면 ‘즉시’ 방통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즉시의 개념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해서 이번에 ‘24시간 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유출과의 인과관계를 찾으면 1억원 이하 과징금인데 그것은 인과관계를 못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줬지만 그 회사를 조사 나가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한 제3자 제공들도 같이 결국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진신고임을 고려해서 면제해 줬고, 개인정보 보호방침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어떻게 보면 방통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여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취약한 분야, 특히 중소 온라인업체들을 보면 이 경우는 개인정보 누출이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봐서 신고했지만 또 많은 경우는 누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처분(안)을 보면서 여력이 있다면 앞으로는 자기가 자신 할 수 없는 업체들이 요청을 하면 그런 업체들을 점검해 주고 개인정보 누출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디가 취약하다는 것도 컨설팅해 주고, 그러면서 위반사항이 나왔을 때는 조금 관대하게 해 주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출된 것을 법에서 당연히 24시간 내 신고하라고 해 놓았는데 그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분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그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앞으로 그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고, 지금 자진신고가 앞으로도 계속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시정명령에 그칠 것인지, 과태료 부과까지 나갈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느 항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기준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기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지 말고,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보관, 이용자의 동의 강제 관행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국회에서나 입법청문회 등에서 많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업종별 서비스의 특성이 다양한 현실을 감안해서 해설과 예시 중심의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는 지난 3월에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개 세미나」 개최한바 있고, 3월~9월까지 업종별 협회·사업자 의견수렴을 24회나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0월에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필요성과 현황인데 박스를 보시면 현재 방법에는 「최소수집 원칙」, 「파기 원칙」, 「동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업자는 이용자 선택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리의 각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의 파기조치 기준이 불명확하여 파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관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는 동의서 내용이 “작은 글씨, 장황한 표현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동의 내용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법령 규정에 보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 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스는 법 내용입니다. 실제 이로 인한 운영 실태를 보면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필수적 동의를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점이 아님에도 또한 회원가입 시 미리 동의를 받아서 수집하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예를 보시면 회원가입 시 홈페이지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처·결혼 여부 등을 수집·동의 요구하거나 배송지 주소를 미리 요구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동의 항목의 범위,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도록 하는 방향성과 예시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필수 선택 동의의 항목은 구체적인 것들은 업종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엄격히 분리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별 개인정보의

파기 기준입니다. 현재 법에 보면 파기사유(목적 달성, 보유기간 종료, 폐업, 동의 철회)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개인정보의 관리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된 정보의 파기조치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업자들이 예비적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집할 때 보면 목적과 보유기간을 모호하게 표시하여 장기간 보관한다든지, 그다음에 제공의 경우도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파기 등 관리 책임이 면제되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파기의 경우에도 파기시점과 파기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의 관리 단계별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집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계약 이행, 요금정산, 또는 서비스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렇게 보유기간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공에 있어서도 서비스와 무관한 제3자 제공을 원칙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파기주체·시점 등을 계약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파기의 경우에도 파기 사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파기하되, 복구·재생할 수 없는 파기방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내 파기토록 하고, 사회 통념상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등 전체 데이터 파기, 서비스 중인 일부 데이터 파기 이런 형태로 예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입니다. 현재 법에 보면 동의내용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영 실태는 동의서 서식을 사업자 위주로 작성하고, 이용자가 읽지 않고 동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작은 글씨·장황한 서술 등으로 읽기 어렵게 표시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필수동의 항목과 그 외 선택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동의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동의서 서식을 개선하고, “법정 고지사항”만을 간결하게 고지하고, “중요내용은 빨간색, 굵은 글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대 효과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파기 및 관리책임을 명확히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선택동의 항목을 필수동의 항목에 포함하여 동의를 강제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자들로서도 동의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적으로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가이드라인이 위원회에 보고 후 발표되면 11월부터 관련 협회와 함께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공동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새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 보완도 많이 했지만 오늘 가이드라인 내용은 법률, 시행령, 규칙 내용이 아니면서도 2페이지에 필요성·현황 3가지를 보면 우리가 정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나 세 번째, 예를 들면 선

택동의 항목인데도 거의 기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또 동의서에 아주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작은 글씨로 장황하게 쓰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읽어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딱 2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80~90%가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하고 한 10~20%가 조금 걱정이 돼서 동의를 안 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결국 이용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서 필요한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 홍보도 많이 하고 사업자들에게 협회를 통해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이용자들이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결국은 언론의 힘을 빌려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정리된 내용은 정말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느껴왔던 것을 조금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잘 홍보가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업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사업설명회를 하고 Q&A 형식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Q&A를 만드실 때 하나 더 부탁 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자면 첫 번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그중에서 제23조제3항에 보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가이드라인에서, 그러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일단 해석 기준을 만들어 준 것이지요. 그러면 이 해석 기준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단순히 가이드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을 잘 몰랐다’, 또는 ‘가이드라인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하기에는 불편해서 안 따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또는 단순히 저희가 시정을 명하는 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제23조제3항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아까 Q&A를 만든다니까, 각 항목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과태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내야 될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서로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는 형사처벌이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안내를 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정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소중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나의 업종별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필수적인 것들을 업종별로 예를 하나씩 딱딱 만들어서 정리해서 보여 주는 것이, 물론 Q&A도 좋지만 Q&A 플러스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지금 쪽 설명식으로 되어 있는데 딱 보면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전파에 꽤 설득력이 있지 않으나 그

렇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한 가지 예시를 <붙임>으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붙임 1>에 쪽 길게 설명한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길게 설명이 있으면 제대로 잘 안 보니까 한참 넘어가면 <개선> 1쪽 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예시 말고 다른 가이드 라인과 관련해서도 이런 예시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서 사업자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선> 1쪽에 개선해 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동의 체크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의미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필수와 선택 구분이 명확해서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다. 협찬고지 법규 위반 방송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주)문화방송 등 4개사 (2014-53-190~19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협찬고지 법규 위반 방송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방송사별 과태료 금액> <표>를 보시면 (주)문화방송 2,600만원, 한국방송공사 5,400만원, 한국교육방송공사 2,700만원, (주)매일방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7일~7월 15일까지 (주)문화방송의 협찬고지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7월 16일 (주)문화방송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고, 7월 30일 문화방송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10월 20일까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주)매일방송의 협찬고지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2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10월 31일까지 각 방송사업자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 및 위법성 판단입니다. 해당 방송사업자들은 한국마사회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작비 및 촬영 장소를 지원받고 한국마사회 및 그 소속기관을 협찬주로 고지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마사회가 협찬하는 경우, 공익성캠페인 이외의 협찬을 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2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가 직접제작한 ‘KBS 파노라마’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 제작비로 3,741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제작비 5,000만원 이상의 교양 프로그램에 한해서 제작협찬 고지를 허용한 「방송법」 제7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호가목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사업자 주요 의견입니다. 사업자들의 주요 의견은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공익성·순수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선처를 바라고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들로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안)입니다. 해당 방송사업자들의 방송법 제10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4],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에 따른 과태료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기준금액은 <표>를 보시면 기준 금액은 1,000만원이고 최고액은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문화방송에 대해서는 ‘바람의 말’(1, 2부)은 방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병원 협찬고지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가중하고, 1·2부가 하나의 주제를 가진 연속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20%를 각각 감경하여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는 ‘사랑의 가족’, ‘KBS 파노라마’, ‘말에게 말을 걸다’의 경우, 방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병원 협찬고지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가중하고, ‘청진기’라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협찬고지 위반 조사 시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으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감경하여 전체적으로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표시 보시면 ‘KBS 파노라마’는 협찬고지 금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해당 제작비 하한 미달의 2가지 과태료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 ‘직업의 세계 일인자’, ‘낭만한국’ 프로그램에서 협찬고지 위반 조사 시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기준금액의 10%를 각각 감경하여 과태료를 2,700만원 부과하는 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매일방송의 경우 ‘말 달리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협찬고지 위반 조사 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의 10%를 감경한 9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11월 중으로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고 납부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의결서(안), 협찬고지 관련 법령, 해당 방송사업자별 제출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업자 주요 의견을 보면 EBS 빼놓고 나머지 3개 사업자는 제작진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성을 느끼느냐, 아니면 과거에도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던 멘트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한국마사회의 경우는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사행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가 방송광고가 금지되면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방송사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방송사업자별로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서 방송이 될 때 아니면 사전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한 번 필터링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개전의 정'이라는 말을 쓰셨지 않습니까? EBS와 매일 방송인 경우에 자료 요청에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하는데 조사에 협조적인 것과 잘못을 뉘우치는 것, 여기에 위원장님 계신 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개전의 정보다는 자료의 협조 부분입니다. 방송광고의 경우는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자료를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찬 부분은 사업자와 협찬주 간의 사적인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송사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료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조사에 협조하는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어쨌든 조사를 제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사무처에서 안건 설명 내지는 오늘 같이 이렇게 안건 보고를 통해 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앞에 관련 규정을 숙지 못 했다는 의견과 개전의 정이 있다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지 않으나,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협조적으로 잘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과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하는 것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협찬고지는 공익성만 허용되는 것입니까, 사행성인 경우에 안 되는 것입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협찬고지는 공익성 캠페인일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 캠페인에 한해서 한국마사회도 협찬고지에 한국마사회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사행성은 안 되는 것과 공익성만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개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사행산업은 협찬고지가 전반적으로 금지되는데 다시 또 예외적으로 공익성 캠페인에 한해서는 다 허용을 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사행산업이라도 할 수 있다?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로또복권은 공익성입니까, 사행성입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지금 사행산업법에 의해서 규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경마와 한국마사회와 관련 부분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복권사업 같은 것, 주택복권이든 무슨 복권이든 복권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사행산업법에서 '사행성'이라는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뭔가 도박을 했을 때 운에 맡겨서 결과가 나오는 것,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그 용어 정의와 사행산업에 관련된 법에 의한 규정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협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협찬을 받을 수는 있는데 협찬고지하는 부분만 별도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겠다는 것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한국마사회도 협찬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를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고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주택복권, 로또복권 등도 운에 맡기는 사행성인데 공익을 위한 복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방송에 협찬됐고 또 고지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저희들이 광고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협찬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봤더니 엄밀하게 말하면 '조사에 협조하고 개선의 정이 있는 경우', 사실은 병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10% 감경을 할 수 있는데 조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봤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간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시 조정절차를 명확히 고시에 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당초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근거해서 균발위 제3차 회의에서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절차'를 의결하고 방송기반국장 전결로 이 절차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근거하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조정절차를 더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고시 제9조(자료제출 요구)를 미등록 규제로 간주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삭제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분쟁 당사자간 성실한 합의 노력을 유도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피신청인의 조정은 조정 불응은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와 피신청사업자에게 합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통위로부터 조정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 불성립을 통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11월 14일~1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 및 고시 시행을 12월초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여기에 보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해서 방송기반국장 전결로 시행’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시 제13조 부칙에 균발위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통위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방통위가 만든 고시를 먼저 적용하고 그 고시에 없는 내용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어떤 문제의식으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과거에도 몇 번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 방통위 여러 법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들이 많이 운영되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과 방통위 전체회의의 기능이 명확치 않은 것은 앞으로 명확히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종적인 결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워딩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질문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을 결국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물론 제가 보기에는 방송광고와 관련된 분쟁은 균발위가 더 전문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해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일반적인 방송분쟁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데 반해서 지금 보고 드린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은 미디어법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에서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현행 규정에 상치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우리 과제인데 계속 이것이 분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것 따로 있고, 광고 관련해서 분쟁조정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쟁조정 취지에 맞게 우리 위원회 내에서 일을 잘해 낼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들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고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말씀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의 광고 문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못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방송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방송법 제9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방통위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고 방통위 소관업무에 광고가 들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랩법 제36조와….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사업자 광고 문제 전반에 대해서….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고시에 필요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법이 있었으니까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아마 규정해 놓았던 중복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30분 폐회 】